

정책연구 2007-24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제도개선 방안

2007. 12

제주발전연구원

발간사

관광산업부문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광수요에 대한 공급부문의 유연성을 확보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관광산업 부문의 세제합리화 및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6년 12월 12일 중앙정부는 제1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이후 제2단계, 제3단계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광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2006년 2월 21일 제정하여 관광산업을 비롯한 4+1 핵심산업에 대한 육성책을 마련하기 위해 1단계,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차별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부문에 대한 법·제도개선 추진으로 종전에 비해 획기적인 관광정책들이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제주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민간주도가 아닌 정부주도의 관광산업 정책 추진은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주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의존적 마인드에서 벗어나 제주도 관광사업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업계 및 관계기관의 관광산업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7. 12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허향진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3
II. 국내·외지역의 관광산업 관련 지원제도 현황	4
1. 한국 관광지원 정책	4
2. 서울특별시 관광지원 정책	18
3. 국외지역 관광지원 정책	20
III. 제주지역 관광산업 관련 지원제도 현황	26
1. 관광정책 변화추이	26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2
IV. 제주지역 관광산업 관련 제도 개선방안	36
1. 기본방향	36
2. 제도 개선	37
V. 결론	54
참고문헌	56

표 목 차

<표 II-1> 1990년대 제도개선 내용	6
<표 II-2>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9
<표 II-3> 신규투자 및 창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10
<표 II-4> 해외관광시장의 획기적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12
<표 II-5>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13
<표 II-6> 관광자원의 품격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14
<표 II-7> 미래 3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15
<표 II-8>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관광부문 제도개선 주요 내용 ..	16
<표 II-9>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관광부문 제도개선 주요 내용 ..	18
<표 II-10> 서울특별시 관광부문 지원제도 주요 내용	19
<표 II-11> 일본의 관광산업 관련부문 주요 지원제도	21
<표 II-12> 대만의 관광산업 관련부문 주요 지원제도	23
<표 II-13> 캐나다의 관광산업 관련부문 주요 지원제도	24
<표 II-14> 두바이 관광산업 관련부문 주요 지원제도	25
<표 III-1> 연도별 주요 관광사업	31
<표 III-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1단계 제도개선 관광산업 관련부문 주요 내용 ..	34
<표 III-3>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관광산업 관련부문 주요 내용 ..	35
<표 IV-1> 영세율 적용 연혁	40
<표 IV-2> 소비용 의무화 제도 도입사례	42
<표 IV-3> 관광컨설팅 사업 예시	43
<표 IV-4> 휴양펜션업 경쟁력 강화 지원대책	44
<표 IV-5> 향만시설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49
<표 IV-6> 차이나타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53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정부는 관광산업이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전산업 평균의 2배를 상회하는 중요한 산업임을 인식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예산 및 세제지원, 관광단지에 대한 개발 확대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부처 합동으로 2006년 12월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2007년 7월에는 재정부 중심의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음. 또 2007년 12월에는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발표되었음.
- 이와 같은 서비스 대책은 그 동안 우리나라 산업이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점을 감안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서의 의료·교육·관광·문화산업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종합대책임.
- 한편 제주도는 동아시아에서 한국경제의 보다 광범위한 개방 및 자유화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 제주도가 가진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고 동시에 국제투자유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중임.
- 지난 2001년 말에 국무총리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동안 제주도에 구축된 관광 인프라와 천혜의 자원 등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추진전략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였음.
-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무사증 입국 확대,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장기체류 허용 등),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 제주도를 여행하는 국내관광객이 구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해 제세(諸稅)를 면제하는 제도인 내국인 면세 쇼핑제도 도입 등을 추진함.

- 제주도내 골프장 건설 및 입장료 인하를 위해 지방세 중과(취득세 5배, 종합토지세 최고 25배, 재산세 17배)를 일반과세로 전환 등을 추진함.
- 관광·휴양분야를 중심으로 7대 선도프로젝트 선정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제주도는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 정부 지원, 자치역량 등의 미흡으로 추진에 한계를 보임.
- 동아시아 주요지역에 비해 세제·가격·접근성 등에 있어 경쟁력이 취약하고, 국내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지역특구 등과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지 못함.
- 전국과 형평성 유지라는 인식으로 근본적 제도 개선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선점효과가 희석됨.
- 이에 따라 2006년 2월 21일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1,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행정분야의 권한은 상당부분 이양되었으나 관광산업 등 핵심산업 육성, 투자유치 관련한 규제적 성격을 띤 권한은 여전히 미온적인 상태임.
- 관광산업부문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광수요에 대한 공급부문의 유연성을 확보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관광산업 부문의 세제합리화 및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또 제주관광정책은 관광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규제완화, 인프라 조성과 함께 관광산업에 대한 도민의식을 바꾸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인 관광산업에 대한 국내·외 선진관광 지역의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 제주관광의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2. 연구 방법

- 국내·외 지역의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관련 2차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와 자료분석(Literature study and Data analysis)

3. 연구 구성

- 제1장은 서론부문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 연구구성에 대해 다룸.
- 제2장은 국내·외 지역의 관광산업관련 지원제도 현황부문으로 연대별 한국 관광지원정책,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서울특별시 관광지원 정책, 국외지역 관광지원 정책(일본, 캐나다, 대만, 두바이 등)에 대해 다룸.
- 제3장은 제주지역 관광산업 관련 지원제도 현황부문으로 제주도 관광정책 변화추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관광산업관련 지원제도 등에 대해 다룸.
- 제4장은 제주지역 관광산업 관련제도 개선방안부문으로 기본방향과 제도개선 등에 대해 다룸.
- 제5장은 결론부문으로 연구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제시함.

Ⅱ. 국내·외지역의 관광산업 관련 지원제도 현황

1. 한국 관광지원 정책

가. 연대별 지원정책

- 우리나라 관광정책 방향을 크게 대별해 보면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주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외화획득 목적으로 국제관광진흥에 주력하여 왔으나 '80-90년대에는 경제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등으로 국민관광이 활발해지면서 복지관광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국제관광 뿐만 아니라 국민관광에도 관광정책의 중점을 두게 되었음.

1) '60~'70년대

- '60년대는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으며 '60년대는 관광산업진흥을 경제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관광산업을 국가의 주요전략사업의 하나로 적극육성한 시기였음.
- '60~'70년대의 관광정책발전 추이를 요약하면 1961년 8월 한국관광의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가 된 관광사업진흥법을 제정공포(법률 제689호)하고 이어 동법시행령(1962. 7. 9, 각령 제874호)과 동법시행규칙(1962. 11. 23, 교통부령 제141호)을 제정하여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1962년에는 국제관광공사법(1962. 4. 24, 법률 제1060호)이 제정, 현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62. 6. 26)가 설립되었음.
- '65년 3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관광정책심의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083호)이 공포됨으로써 관광정책을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 1967년 3월 제정 공포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리산이 지정되었음.
- '70년대 들어 관광산업은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되어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시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관광기본법(1975. 12. 31, 법률 제2877호)이 제정되었고 체계적인 관광지개발을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촉진법(1975. 12. 31, 법률 제2879호)이 제정되었음.

2) '80년대

- '80년대에는 국제관광진흥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국제관광과 국민관광의 진흥을 동시에 추진하였음.
- 1980년에는 50세 이상 국민에 대해 부분적으로 해외여행자유화를 실시한 이후 점진적인 해외여행에 대한 문호를 넓혀 나가다가 1989년부터는 완전한 해외여행자유화를 실시하였음.
- 1987년에는 관광진흥법과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통합 개정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법체계를 일원화하였음.

3) '90년대

- '90년대는 다가오는 21세기를 관광선진국의 위치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축적해 온 시기였음.
- 1993년도에는 대전EXPO가 내·외국인 관광객 1,400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리에 치루어졌으며 EXPO 전후기간중 일본인 관광객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여 일본인 관광객의 유치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음.
- 정부조직개편('94.12.23)에 따라 교통부에 속해 있던 관광정책기능이 문화체육부로 이관되었으며 '95년 이후 진행된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1> 1990년대 제도개선 내용

구분	세부내용
1995년	· 관광호텔 및 국민호텔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 관광숙박업 부대시설의 위탁경영 확대, 버스전용차선에 관광버스 운행허용, 관광호텔 중소기업 적용 기준 확대, 10대계열기업의 호텔건설 시설자금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 자연녹지지역 등의 관광호텔 및 위락시설 입지완화 등이 이루어졌음.
1996년	· 호텔, 여관업 및 관광지소재 식당 여신규제 완화, 여행업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관광중사원 자격시험면제 확대, 10대계열기업의 관광시설용 부동산취득 허용, 관광단지용 부동산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3년으로 연장,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여행업 국내여행객 모집구역 제한 폐지, 문화 관광명소를 연결한 4개코스의 서울 시티투어 운영 등이 이루어졌음.
1997년	· 관광안내기능 강화를 위한 도로표지규칙 개정, 우수여행업체 지정 지원제도 도입, 국외여행인솔 교육기관 지정 및 양성지원, 전문관광식당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단지 개발 관련 지방세 지원 2000년까지 연장,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조성규모 제한완화, 국제회의시설을 민자유치촉진법상 대상시설로 지정, 산업단지내 관광시설용지 조성시 전기시설 부담비용 면제, 공유수면매립지중 사유지의 관광호텔 건설목적 임대허용, 중국인 단체관광객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여신규제 폐지, 시·도 단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관광지표지(한자병기)설치 확대 등의 관광안내체계 개선, 전문휴양업의 상시근로자수를 20인이하에서 50인이하로 확대 및 관광호텔업(현행 100인이하)의 확대 등 관광관련업종의 중소기업 범위확대 등이 이루어졌음.
1998년	· 중국인 관광객 제주도 무사증 입국 허용, 해상관광호텔 신축규제 폐지, 관광호텔 전력요금 산업요금 적용, 특1등급 관광호텔에서의 혼인예식업허용, 법인이 분양 받은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폐지, 관광음식점의 재산세 중과 제외, 관광시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유원시설업 상수요 요금의 영업용 1종 적용, 관광호텔 외화획득분 상수도 요금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유치 산업에 관광산업 포함 등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1999년	· 국정지표에 최초로 “문화관광의 진흥” 포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수립,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확대회의 개최 등 어느해보다 관광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강력히 제시된 한 해였음.

자료 : 문화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년도.

4) 2000년대

- 2000년대는 뉴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21세기 관광선진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준비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2000. 7. 19일에는 대통령 주재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10대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제도개선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13건의 지원대책도 추가로 마련하였음.

- 2001년 12월 27일 관광산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제3차 관광진흥확대 회의(2001.7.23)를 개최하여 12건의 신규과제를 발굴하였고, 수도권 관광숙박 단지 조성 협의 완료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6건을 개선하였음.
- 2002년에는 여행상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정해 줌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의 여행상품 선택에 편의를 제공하고 여행상품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여행상품인증제를 처음 시행하였음.
- 2003년에는 사업 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합리화 등 종합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
 -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04.12월까지 연장하였으며 한편으로 관광산업의 세제 개선에 대하여 연구용역 발주와 더불어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음.
 - 세제 개선과 함께 관광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2003년에는 투자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투자프로젝트의 원스톱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 관리·홍보를 위해 '관광투자지원센터'를 관광공사내에 설치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 지정요건 완화 및 기한 폐지를 추진하였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금리를 변동금리로 전환하여 4%대로 인하하였음.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히 컨벤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컨벤션기획사 자격제도 도입,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였음. 또한 컨벤션 전문인력 인턴십 제도를 통해 컨벤션시설, 기획업체, 컨벤션뷰로 등에서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함.
- 2004년은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04-2008)' 등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중기계획이 수립 되었음. 또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됨.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간 제조업에 비하여 차별적 세제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개선노력이 범정부적으로 적극 진행 되었음.

- 2005년 5월부터는 저소득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여행바우처'제도를 시행함.
- 2005년 6월에는 중국인 관광객 무사증 경유(TWOV) 입국 대상에 유럽연합 등 30개국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음. 또한 관광산업을 수출업에 포함하여 무역금융, 수출보험, 해외 전시 지원 등 수출산업으로서의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시행령을 2006년 2월 28일에 개정하였음.

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2006년 12월 12일)

- 정부는 관광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수출제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제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 2006년 12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 신규 투자 및 창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해외 관광시장의 획기적 확대 여건 조성,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 관광자원의 품격과 부가가치 제고 등 다섯 개 분야에 걸쳐 총 62개의 과제 추진 등 획기적인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함.
- 세제지원, 규제완화, 재정확대 등 총 62개 과제가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음.

1) 조세부담 완화

- 서비스산업이 제조업과의 차별시정,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토지 보유세 부담 차별 개선, 관광산업 및 유통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호텔·유통단지예 '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서비스사업용 토지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검토,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을 추진함.

<표 II-2>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구분	세부내용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토지 보유세 부담 차별 개선	· 물류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휴양업, 관광호텔업 등 업종의 성격상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중부세를 경감 · 대상업종 : 유원시설업, 종합휴양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관광호텔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도심지역 공장용지 · 3년간 한시 적용('07~'09년)
서비스산업 적용 전력요금 체계 개편 추진	·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원가대비 약 26% 높은 가격을 부담 * 일반용 : 평균판매단가 97.91원/kWh (원가 77.16원/kWh) * 산업용 : 평균판매단가 62.24원/kWh (원가 61.24원/kWh) · 서비스산업 적용 전력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 '10년까지 단계적 요금조정을 통해 일반용·산업용 요금 등의 원가회수율이 같아지도록 추진 · 우선 관광산업 및 유통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호텔, 유통단지에 '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서비스사업용 토지 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검토	· 서비스업 용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조업 수준으로 개발부담금 감면방안 검토 · 사업의 공익성, 파급효과, 미래 성장가능성 및 토지조성자의 직접이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감면대상 서비스업의 범위와 감면수준 결정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사업 등 관광호텔의 지구노력을 보아가면서 2007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추진

자료 : 문화관광부 등 정부부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6.12.12.

2) 신규투자 및 창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관광(단)지 등 관광시설 개발시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광단지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부담금 등 지원 확대, 관광(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함.
- 유원지내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유원지 설치가능시설 종류 확대, 유원지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함.
- 골프장 시설 및 운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범위 확대 및 규모제한 개선, 골프장 사용 계량단위 통일 등을 추진함.
- 관광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회원 모집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연계한 회원모집 허용, 기존 관광호텔업의 회원 모집 허용 추진,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활성화 지원, 자연공원내 설치가능 숙박시설규제 개선, 관광호텔 외국인 종사자 고용 허용 검토, 외국인 공연이 가능한 관광휴양시설 확대, 관광호텔 “봉사료 제도” 단계적 폐지 유도 등을 추진함.

<표 II-3> 신규투자 및 창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구분	세부내용
관광(단)지 등 관광 시설 개발시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단지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부담금 등 지원 확대 · 지자체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관광단지에 대해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제277조) · 관광(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시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를 확대하여 관광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절차와 이에 따른 관광호텔 등 개별 관광사업의 승인절차 통합(관광진흥법 제55조) · 관광지 지정 그리고 조성계획 승인시 관계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의무적으로 회신토록 근거 규정 마련 · 관광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구비서류 감축 · 소규모 관광시설 설치시 적용되는 산지전용허가면적 제한기준 완화 · 산지에 소규모 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지전용 허가 면적 제한을 완화
유원지내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원지 설치가능시설 종류 확대 · 대상시설 예: 자연휴양림, 승마장, 사격장, 산림욕장 등) · 유원지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 유원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시 종전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1/2로 완화
골프장 시설 및 운영 관련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범위 확대 및 규모제한 개선 ·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구역과 숙박시설 규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체류형 골프 관광객 증가 유도(체시법 개정) · 골프장 사용 계량단위 통일 · 야드와 미터를 혼용하고 있는 국내 골프장 거리 단위를 점진적으로 미터로 통일하도록 골프장경영협회가 사업주에게 권고
관광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모집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연계한 회원모집 허용 · 관광진흥법상 회원모집이 가능한 관광업종들을 연계한 회원 모집 허용 · 기존 관광호텔업의 회원 모집 허용 추진 ·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등록하는 관광호텔에 한해서도 회원 모집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존 호텔은 여전히 불허 ·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활성화 지원 · 중저가 관광숙박 브랜드 개발 및 체인화 추진('07년중 10개소) · 중저가 관광숙박업 단지 조성시 단지내 일반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 자연공원내 설치가능 숙박시설규제 개선 · 관광진흥법상의 휴양콘도미니엄도 호텔, 여관의 경우와 같이 자연공원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검토 · 관광호텔 외국인 종사자 고용 허용 검토 · 관광호텔의 경우 외국인 종사자 고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외국어 구사 가능 직원 부족,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 상존 · 외국인 공연이 가능한 관광휴양시설 확대 · 현재 3급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관광극장식당 등에 대해서 외국인 공연이 가능하나, 콘도, 관광식당업 등은 불허 ·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과 관광식당내에서도 외국인 공연이 가능하도록 영상물등급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 · 관광호텔 “봉사료 제도” 단계적 폐지 유도 · 현재 관광호텔 식·음료상품에 부과되는 “봉사료(10%)”는 사실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급여로서, 법적 근거없이 부과되어 여행상품 가격 상승 초래

자료 : 문화관광부 등 정부부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6.12.12.

3) 해외관광시장의 획기적 확대 여건 조성

-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외 관광홍보 마케팅 예산을 현재 75억원에서 275억원으로 대폭 확충하고, 관광 홍보 브랜드 구축을 시행함.
- 매력있는 한국관광 명품 개발을 위해 우수지역 축제를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 한국 공예·음식의 관광자원화,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업을 관광진흥법에 신설, 외국 관광객을 위한 산업체 방문코스 네트워크를 구축함.
- 외국 관광객 대상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음식·숙박업 사업장 서비스 인증제도 개선, 택시 운송서비스 제고를 위한 경영·서비스 평가제 도입, 잠재시장인 베트남, 인도 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함.
- 중국 관광시장 지속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2007 한-중 상호방문의 해' 사업 추진, 중국 관광객의 입국절차 개선, 차이나타운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함.
- 여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행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명칭 변경, 여행업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확대, 여행보증 보험 기한 만료전 사전통보 의무화, 관광종사원 자격증소지자 채용 의무화 등을 추진함.

<표 II-4> 해외관광시장의 획기적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구분	세부내용
외국 관광객 유치 위한 홍보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관광홍보 마케팅 예산의 대폭 확충 · 해외 관광 광고 예산을 현재 75억원에서 275억원으로 대폭 증액 · 관광 홍보 브랜드 구축 · 새로운 한국관광 홍보 슬로건인 'Korea, Sparkling'을 기초로 로고 디자인, 시장별 마케팅 전략, 평가 프로그램, 연계상품 개발 추진
매력있는 한국 관광 명품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지역축제를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 · 최우수 선정 축제에 대한 연계상품 개발 및 해외홍보 마케팅 지원을 강화. 문화관광축제 컨설팅제 도입 · 한국 공예·음식의 관광자원화 · 한국 공예명품 발굴을 지원하여 다양한 관광기념품 개발의 기초를 다지고, 다양한 전시회, 공모전 참가를 활성화 하여 유통활성화 지원 · 한국음식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전통음식 복원 및 표준요리법을 개발·보급하고, 세계음식박람회, 한국음식 경연대회 등을 지원 ·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업을 관광진흥법에 신설 · 고택체험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시설 개보수 지원 · 외국 관광객을 위한 산업체 방문 코스 네트워크 구축
외국 관광객 대상 서비스 수준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숙박업 사업장 서비스 인증제도 개선 · 택시 운송서비스 제고를 위한 경영·서비스 평가제 도입 · 잠재시장인 베트남, 인도 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중국 관광시장 지속 확대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 한-중 상호방문의 해' 사업 추진 · 중국내 한국 주간행사, 한류 관광선 운행, 미용체험 프로그램 등 특화상품 개발, 영화·청소년·관광종사원 등 분야별 교류 확대 · 중국 관광객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범 국민 캠페인 전개 · 중국 관광객의 입국절차 개선 · 중국 청소년 수학 여행단 무비자 입국 허용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 추진 · 중국 전문여행사 가이드에 대한 복수시증 발급, 중국 단체 관광객 규모 제한 완화, 비자발급 소요시간 단축 추진 · 차이나타운 활성화 지원 · 인천 차이나타운을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출입국 관리법 및 도로 교통법상의 특례를 규정
여행업의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여행계약 방법 구체화, 광고 표시 명확화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기획여행 실시 보험 가입액을 모객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소비자 보호 및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 ·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명칭 변경 · 여행업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확대 · 여행사 정보 DB 구축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양질의 여행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여행보증 보험 기한 만료전 사전통보 의무화 · 관광종사원 자격증소지자 채용 의무화 ·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의무적 고용

자료 : 문화관광부 등 정부부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6.12.12.

4)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

- 범국민적 인식 제고 및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내관광 홍보 강화, 여름 휴가 분산제의 실시, 수요자 지향적 관광소재 및 상품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함.
- 국민관광의 지역확산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토캠핑장 대폭 확대, 관광안내체계 개선,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개장시간 연장, 국내·외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교통표지판 개선 등을 추진함.

<표 II-5>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구분	세부내용
범국민적 인식 제고 및 참여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관광 홍보 강화 · 대한민국 '구석구석' 국내여행 광고를 시민·학생단체 등을 활용한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전환하여 저변확대 유도 · '내나라 여행 박람회'의 연초 개최(2.8~2.11) 및 국내여행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국내여행산업 활성화 계기 마련 · '내나라 여행 답사단'에 포털사이트 동호인, 대학 여행동아리, 등산관련 단체 등을 폭 넓게 참여시켜 네트워크화 유도 · 국민의 건전한 국내여행 유도를 위해 공공부문 외에 민간부문(각종 협회, NGO 등)도 참여하는 건전관광 시민운동단체 육성 · 관광공사 주도로 테마별(자연, 문화, 생태, 축제 등)로 구분하여 월별 테마관광상품 선정 및 홍보를 통하여 국내여행 수요에 적극 부응 · 여름 휴가 분산제의 실시 : 여행문화 개선 캠페인 시행 · 취약계층 복지 관광에 대한 지원 확대 ·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대상 복지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 지원을 통하여 복지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 및 환경 조성 ·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문화체험 기회 제공 · 장애인의 국내여행 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 실시 및 매뉴얼 제작 배포 등 · 수요자 지향적 관광소재 및 상품 개발 지원 · 교육체험과 국토가치의 재발견을 유도하는 수학여행의 새로운 모델 개발 및 보급 · 국민여행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통계 및 분석을 통한 마케팅 기초 자료 제공 · 소비자·공급자·판매자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우수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시스템 구축 · 한국 고유의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소프트 경쟁력 강화 및 여행문화의 패러다임 개선을 통한 '대한민국 관광명품 시리즈(가칭) 발간'
국민관광의 지역확산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토캠핑장 대폭 확대 · 가족단위 여행객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을 '10년까지 총 32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국민여가 수요에 부응 · 관광안내체계 개선 · 관광공사, 관광협회,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제공하고 있는 관광 안내소를 상호 네트워크화 하여 관광안내 서비스 향상을 도모 · 관광안내소, 홍보간행물, 관광안내표지판, 인터넷 등 관광 안내 관련 정보의 표준화(외국어 표기, 픽토그램, 명칭 등) ·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개장시간 연장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궁 등의 야간개장 시간 연장 및 지방 확산을 통해 문화관광소비 증대 촉진 및 삶의 질 향상 · 국내외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교통표지판 개선 · 국내 운전자 및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표지체계 개선 방안 마련 추진

자료 : 문화관광부 등 정부부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6.12.12.

5) 관광자원의 품격과 부가가치 제고

- 관광자원의 내실있는 확충을 위해 ‘관광자원개발에관한법률’의 제정 추진,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역의 관광혁신 역량 강화 지원, 지역의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활성화 등을 추진함.

<표 II-6> 관광자원의 품격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구분	세부내용
관광자원의 내실있는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자원개발에관한법률’의 제정 추진 · 남해안 벨트 등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 자원개발심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조정을 통한 난개발 방지 · 지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 보강, 관광개발의 평가·환류체제 구축, 이해관계자간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개발 유도 ·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대상지의 전체적인 특성을 감안한 지역별 특성·지역간 연계성을 극대화 · 문화관광자원, 생태녹색 관광자원, 농촌관광, 영상관광 등 새로운 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개발 사업 추진 ·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추진 · 지역특성에 따른 규제의 차등적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 · 지역의 관광혁신 역량 강화 지원 · 지역 관광사업의 창업·경영 컨설팅, 지역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 서비스 R&D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관광발전지원센터 설립 추진 · 지자체 관광담당 공무원의 외부 전문가 영입을 확대하고, 잦은 전보를 지양토록 유도하여 지역 관광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제고 · 지역관광 상품개발, 프로그램 기획, 마케팅 분야에 능력을 갖춘 지역 관광 혁신 애니메이터를 양성하고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배치 · 지역의 우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3명 자원(명인, 명소, 명품) 발굴 및 DB 사업 추진 · 지역의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 지역간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 지역별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 관광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 지역별 우수 관광 스토리 개발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이를 다른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 ·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을 가고 싶은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을 3개소 내외 선정 추진 ·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활성화 · 도농교류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도농교류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

자료 : 문화관광부 등 정부부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6.12.12.

5) 미래 3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의료관광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미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서는 정부가 의료관광을 적극 육성함.
-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수준이 높고 일본, 미국 등에 비해서는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의료관광의 충분한 잠재력 보유

<표 II-7> 미래 3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구분	세부내용
의료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의료기관의 광고 허용 범위 확대, 해외에 거주하는 환자유치에 한해 소개·알선 허용 추진('07년 상반기중 의료법 개정) · 치료목적 외국인 방문객과 동반자를 위한 G비자 제도를 활성화 하 고 특히 치료목적 중국인을 위한 비자발급 절차 개선 · 의료분야 전문 관광통역안내사 제도를 도입하고, 병원내 관광안내시설 확충 등 의료관광객을 위한 관광서비스 인프라 개선 · 여행사와 한국관광공사가 협력하여 의료서비스와 관광지를 연계하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의료+골프, 공연, 사찰체험 등) · 국내병원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연구 · 국내병원의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07년중 연구 용역 추진 ·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관광 시설에 대한 특례 · 경제자유구역내 설립 병원의 경우 치료·휴양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가능토록 의료법상 특례를 규정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를 호텔, 스파(온천) 등도 가능하도록 허용(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의 2 신설)
국제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컨벤션뷰로(CVB, Convention and Visitor Bureau) 설립 운영 · 국제회의 전담 조직의 강화를 위해 관광공사, 코리아컨벤션뷰로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중앙 컨벤션뷰로 설립 · 국제회의기획업(PCO,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집중 육성 · 우수 PCO 인증제 도입, PCO 서비스 매뉴얼 및 평가 척도의 개발 등을 통한 전문 국제회의기획업 집중 육성 · 해외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관광기금 지원), 대학배출 인력의 인턴제 확대, 컨벤션기획사 자격증제도 보완 등 전문인력 양성 · 국제회의 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 · 국제회의 유치확대를 위해 국제회의 요건 완화, 유망 국제회의 선정, 국제회의개최 준비자금 대여제 도입을 추진
크루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루즈 산업 육성 방안 마련 · 동북아 크루즈의 대표 기항지로 이미지를 굳히고, 한중일 연계 크루즈 시장 선점을 위한 크루즈 산업 육성 방안 마련 · 체험기항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실시, 관광 유람산업 개편 등을 통한 크루즈 관광사업 기반 조성 ·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06년까지만 적용 예정이던 크루즈 선박에 대한 접안·정박료 50% 감면혜택을 '07년 이후에도 2년간 부여 · 10대 해외크루즈 유치항(3대 허브항, 7대 보조항)을 선정, 크루즈 유치 홍보, 인센티브 제공, 관광객의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 등 지원 ·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선상 입국 수속이 상시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

자료 : 문화관광부 등 정부부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6.12.12.

다.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대책 주요 내용

-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중골프장에 대해 세제감면·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입지규제에 따른 공급부족과 필요이상의 시설규제로 인해 비싼 골프장 이용료와 해외소비 증가추세 지속적임. 현재의 반값수준으로 이용 가능한 대중 골프장 공급을 통해 해외 골프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함.
- 소득증가에 따라 여가소비의 대상이 내륙·산악 중심에서 해양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나, 국내 인프라와 관련 장비산업이 취약하여 저변확대를 제약함. 기반시설 확충·제도적 기반마련 등을 통해 증가하는 국내·외 해양관광레저 수요를 흡수함.

<표 11-8>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관광부문 제도개선 주요 내용

구분	세부내용
저렴한 골프장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경작환경이 열악한 농지를 농민이 자발적으로 주식회사를 결성하여 현물출자한 지역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 검토 · 태안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체류형 대중골프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정·행정적 지원 추진
요트 등 해양레저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확충 : 마리나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지역별 적정 수준의 시설 개발을 위해 국가차원의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 수립 · 해양레저스포츠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 해양레저선박 항행구역 제한 완화 · 해양레저활동 활성화에 부합하는 보험상품 개발 · 공유수면 점·사용료 경감 · 마리나 지원 법적 기반 강화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민간 해양레저스포츠 사업자의 시설 설치 및 임대장비 구입자금 지원 · 해양레저 안전관리 강화 · 소형선박 등록제 도입 ·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교육·홍보 강화
크루즈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크루즈선 국내기항 유치 촉진 · 국내 기항 크루즈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해 고부가크루즈 관광객 유치 ·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통과여객 인정 · 크루즈산업 육성기반 조성 · 크루즈선 기항 전용부두 확충 · 국적 크루즈선의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를 완화하는 방안 추진 · 국적 크루즈선사가 민간 선박편드를 활용하여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관광레저산업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단지내 전력공급설비 공사비 보조 · 소규모 민간관광자원 기반시설 확충지원 · 관광식당업 지정 및 관리기준 개선 · 관광숙박업 사무처리업무 광역화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시 보전산지 기준정비 · 초경량 비행장치 등 항공레저 규제체계 정비 · 국내여행소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08년 초·중·고교 단기 방학 실시

자료 : 문화관광부 등 정부부처,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7.7.30.

라.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대책 주요 내용

- 정부는 2007년 12월 10일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발표함.
 - 3단계 대책은 「1·2단계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보완대책으로서, 차세대 유망 성장산업인 문화·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함.
 - 관광 등의 분야도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긴요한 개선대책을 함께 추진함.
- 정부는 일부 자연공원 내에 쾌적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자연공원 내에 콘도미니엄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음.
 - 다만, 비회원이 성수기에도 일정 비율 이상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음. 환경부와 문화부가 지자체, 콘도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 50% 이하'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음.
 - 자연공원 내 콘도 설치를 허용하면서 공원규모와 장래이용 추이 등을 고려해 회원모집 숙박시설 규모 총량을 정하는 총량제 도입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음.
- 또한 경쟁력있는 의료분야 밀접지역과 관광자원 연계가 가능한 지역, 외국인 접근이 용이한 지역 등 조건에 맞는 곳을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하고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음.
 - 의료관광특구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특구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과 규제 특례 등 특구 활성화방안을 2008년 상반기까지 구체화하기로 했음.

<표 II-9>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관광부문 제도개선 주요 내용

구 분	세부내용
자연공원내 콘도 설치 허용	· 현황 : 자연공원내 호텔·여관·여인숙 등의 숙박시설은 설치 가능하나,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은 회원전용시설이라는 이유로 설치를 불허. 일부 자연공원내 쾌적한 숙박시설의 공급부족으로 자연공원 탐방객의 불편 초래 · 개선방안 : 비회원인 성수기에도 일정비율 이상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허용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 현황 :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환자 유치에 경쟁력이 있는 의료기관과 공동협의체(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구성('07.3월). 경쟁력있는 의료분야 밀집지역, 관광자원 연계 가능지역, 외국인 접근 용이 지역의 특구조성을 통한 의료관광 상품개발 필요 · 개선방안 :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의료관광 특구를 마련하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자료 : 문화관광부 등 정부부처,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2007.12.10.

2. 서울특별시 관광지원 정책

- 최근 들어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답보상태를 보이는 원인으로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에 비해 서울관광의 가격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원高 엔低 현상까지 겹쳐 서울 체재비가 더욱 상승하며 중국관광객은 한국보다 일본을, 일본관광객은 한국보다 중국을 관광지로 선택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서울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서울관광의 가격경쟁력을 손꼽으며, 숙박업, 음식업, 여행업, 운송업 등 관광관련 업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함

<표 II-10> 서울특별시 관광부문 지원제도 주요 내용

구 분	세부내용
<p>중저가 숙박시설에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광객들의 서울 체재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숙박비를 낮추기 위해 100달러 이하의 중저가 숙박시설을 적극 지원 · 2010년까지 3,889개 모델의 10%인 300곳 이상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개보수 자금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 ·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2-3급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외국 중저가 호텔과 연계해 체인화하거나, 서울 자체브랜드를 개발해 체인화. 또 체인화 참여업체에 대해 자체 브랜드 개발, 예약 결제 시스템 구축, 시설개보수 자금 지원, 관광호텔 증개축시 용적률 상향조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 · 관련업체에 대한 재산세,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 감면 추진
<p>북창동 지역에서 '韓푸드 Zone'이 시범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창동 관광특구내 음식점 중 외국인이 이용가능한 업소 20~30개를 지정해, 쿠폰을 소지하면 1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한류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함. · 참여업소에 대해 쿠폰·표지판 제작, 맛집지도 제작·배포 등을 지원. · '韓푸드 Zone'은 시범운영을 거쳐 향후 다동, 명동 일대로 확대
<p>관광음식점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식당에 공급되는 육류 등에 대해 부가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 관광지 주변의 중저가 우수관광음식점을 지정해 푸드맵(food map)을 제작하고, 인터넷 홍보 등 마케팅을 전폭적으로 지원
<p>관광객의 수송편의 증진 및 수송원가 부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개별관광객을 위한 소형차량 위주로 관광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에서는 36인승 이하 외국인전용 관광버스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관광전세서비스의 원가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재 전세관광버스는 일반노선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와는 달리 유류보조금 지급이 없어 200km 기준 1일 요금이 46만2천원에 이를. 타 운송수단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광버스의 운임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해 전세버스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원을 검토. · 외국인관광객 수송용 전세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 및 등록세 면세 등도 검토
<p>여행업체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전담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적 중국관광객에게 초청장을 발급. 중국인이 공무원적 여행을 하려면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초청공문이 필수인데, 시는 서울지역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중국공무원, 복수사증 발급 기업 임직원, 초·중·고 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급해 줌으로써 여행사의 중국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를 지원. · 서울방문 인센티브 관광단에게 청계천문화관, 데이터센터 등 시정 관련시설의 견학을 지원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산업시찰 방문도 적극 지원 · 직항노선이 없는 외국도시나 성수기 항공기 좌석부족으로 인한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전세항공기 운항도 지원. 2007년 하이서울 페스티벌과 연계한 전세기상품 개발 여행사에 전세기 보조금, 홍보비용 등을 시범지원 후 점차적으로 확대. ·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가별 현지 전담여행사를 지정·운영하는 등 일본, 미주, 동남아 등 전략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 전개. · 우선 주고객인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직접 서울관광상품을 판매하고 관광객을 모객할 현지 전담여행사를 운영. 전담여행사는 서울특화상품 개발과 홍보·판매를 도맡고, 시는 광고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 올 상반기 중국과 일본의 전담여행사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 · 우수관광상품을 개발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 2007년 하이서울 페스티벌과 관련한 축제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2,000명 이상 유치한 상위 10개 업체에 대해 최고 500만원, 우수기획상품으로 선정된 업체에 상품홍보 지원, 모객실적이 우수한 5개 업체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관광 활성화를 꾀함.

자료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07.2.

3. 국외지역 관광지원 정책

가. 일본

1) 관광입국입국추진기본법

- 2006년 12월 13일 참의원본회의에서 의원입법에 의해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 이번 법률은 일본관광법의 기본적인 골격을 개정하였고, 관광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1963년에 제정된 현행의 '관광기본법'의 전부를 개정하여 법률의 이름은 '관광입국추진기본법'으로 개정함으로써 21세기 일본의 중요한 정책의 중심으로서 명확히 자리매김한 것임.
- 관광입국의 실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념으로서 지역의 창의를 살린 주체적인 시도를 존중하며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국내외로부터 관광여행을 촉진하는 것이 장래에도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임.
- 정부는 관광입국의 추진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을 책정하게 됨.
- 정부는 기본적 시책으로서 국제경쟁력이 높은 매력있는 관광지의 형성,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관광의 진흥에 기여하는 인재의 육성, 국제관광의 진흥, 관광여행의 촉진을 위한 환경의 정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로 함.
-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됨.
- 일본 정부는 관광입국에 관한 시책의 마스터플랜인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성이 원안을 작성하여 각의결정하게 됨.
- 또한 법의 취지를 살려서 지역에서 매력있는 관광지만들기를 시도할 경우 지원하고 비지트 재팬 캠페인을 강화하는 등 관광입국의 실현에 관한 시책을

관계부처가 연계하여 추진하게 됨.

2) 주요 지원제도

- 일본여행업협회(JATA)는 일본 크루즈 시장 확대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2007년도를 '크루즈 해 2007'로 설정, 일반소비자들의 참가 증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시작으로 각종 이벤트 계획 및 활동 계획을 수립함.

<표 II-11> 일본의 관광산업 관련부문 주요 지원제도

구분	내용
아시아 공통 IC 승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성은 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IC 카드 승차권의 실용화를 위해 2008년부터 실정 시험을 시작 · 아시아 각 국가의 IC 승차권을 인터넷과 일본 공항, 여행사에서 사전에 구입할 수 있는 정책이 2008년 여름을 목표로 실시될 예정.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면 해당 IC 승차권으로 열차를 탈 수 있게 되며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과 협력을 진행. · 국내 신용 카드에 아시아 국가의 IC 승차권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침도 진행. 이에 따라 티켓을 구입하지 않고 열차에 탈 수 있게 되며 운임은 후에 일본에서 지불. 한국과 일본의 경우 간사이(關西)의 IC 승차권인 「PiTaPa」의 운영 회사가 한국의 카드 회사와 한국의 신용 카드에 PiTaPa의 기능을 추가하기로 협의했고 일본 카드사도 한국 IC 승차권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
일본과 타이완, 운전 면허 상호 승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완과 일본은 관광 등 1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에 대한 일본과 타이완의 운전 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를 2007년 9월 19일부터 도입
전용기 체재국 규제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사가 외국 항공사의 전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 여행 일정의 절반 이상을 그 항공 회사가 속한 국가·지역에서 보내야 한다는 규제를 철폐하고 여행사가 자유롭게 일정을 조절 · 예를 들어 여행사가 일본에서 마카오 항공을 이용하여 2박 3일 동안 홍콩(香港)·마카오 투어를 기획할 경우 마카오에서 2박을 할 필요가 없고 1박만 하고 홍콩 등으로 이동할 수 있게됨
크루즈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선박회사 총괄대리점(GSA)로 크루즈 관련 문의 및 예약의뢰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해외의 예약시기가 맞지 않아, 선실 확보가 어려웠던 사례가 있어, 2007년부터는 미디어 및 전용웹사이트를 통해서 조기 예약의 특전을 부여 · FIT를 위한 크루즈 취소보험료 개발 · 크루즈 어드바이저 제도의 보급 및 자격증 취득 권장
관광 패스포트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츠시 비와코 호수 오츠 관광 협회는 시내에 있는 사찰이나 관광 시설 등 총 11개소의 입장료나 관람료 할인은 물론 숙박시설 등 44개소에서 다양한 특전을 얻을 수 있는 「관광 패스포트」(1000엔)의 2006년 7월 판매 · 패스포트에는 쿠폰 6매가 들어 있어 연력사, 온조우지(미이데라), 석산사, 서교사, 히요시 타이샤, 바위틈 절, 오오미 신궁, 시계 박물관, 공인 저택 등을 관람 할 수 있어 함께 5,600엔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음. 호텔이나 기념품점 등 44개 시설에서 패스포트를 제시하면 식사나 상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비와코 유람선 과 난사토 수산 센터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음.

자료, 한국관광공사, 세계관광시장정보, 각년도 자료.

구 분	내 용
환경 친화적인 관광 버스 평가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버스의 환경 성능 평가는 자동차 검사(차량검사)에 근거하는 배출 가스의 규제치를 근거로 「AA」 「A」 「B」 「C」의 4 단계로 평가. · 버스들은 평가 라벨을 승강구나 후부 유리에 붙이게 되며, 도는 평가에 대한 환경기준의 가이드 라인을 책정하며 가이드 라인에 근거하는 평가 수속이나 라벨의 교부는 버스 협회가 실시 · 승객은 국내 관광 버스가 환경친화형 버스인지를 버스 본체나 투어 팸플렛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여행사도 환경 성능이 좋은 버스 배차가 가능하게 됨.
외국인 렌트카 이용객을 위한 편의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큐슈 운수국과 큐슈 지방 정비국은 외국인 관광객의 렌트카 이용을 위해 숫자를 입력하는 카 네비게이션 방식의 「맵 코드」를 사용한 큐슈 관광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한국어판과 영문판을 한국이나 홍콩의 여행사 등에 제공 · 맵 코드는 최대 10자리수의 숫자로 상세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주소 표시 방식으로 카 네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그 이용 범위가 확대 · 이번 정보 데이터는 외국의 여행사 전용으로 큐슈의 테마파크나 전철역 등 약 300 개 시설의 맵 코드와 코드의 입력 방법, 시설 개요를 소개한 콤팩트 디스크를 제작
관광대가 인증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돗토리시 관광학교는 관광 관계자에게 접객이나 관광지의 지식을 전수 하고자 2006년 개교. · 필기나 면접 등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돗토리 관광 대가」로 인정 · 관광학교는 관광에 관한 지식이나 매너를 교육시켜 관광객의 접객 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돗토리 관광 컨벤션 협회 등에 의해 2006년 2월에 개교. 수강자들은 근무하는 호텔이나 택시 회사의 추천을 받아 참가
7개 언어 휴대폰 렌탈 및 통역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이타현 벳부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2006년 2월 20일부터 통역 전문 콜 센터(미국)와 접속할 수 있는 휴대전화 렌탈 서비스 제공 예를 들면 외국인이 통화상태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휴대폰에 내장된 콜센터를 연결하면 통역이 상대방과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 · 콜 센터는 24시간 서비스를 통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7개 언어 서비스 · 휴대전화의 통역 서비스는 하와이나 한국에서 시행중임
한국인의 단기비자 영구화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으로부터의 관광객 등에게 대한 90일 이내의 단기 사증(비자) 면제 조치를 3월 1일부터 영구화. · 한국은 이미 일본에 대해 사증 면제를 실시한 상황으로 이번 조치로 한·일 쌍방이 사증 면제로 보조를 갖추게 됨.
관광지 주유버스 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덴 교통(시모노세키시)은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 시모노세키 시내의 주된 관광지에 정착하는 「시모노세키 관광 주유 버스」를 운행. · 첫 방문의 관광객에게도, 환승의 걱정을 없애고 즐길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함이 그 목적으로,기존의 관광 일일 자유 승차권(어른 700엔, 어린이 350엔)으로 즐길 수 있음.
관광카리스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1월부터 관광카리스마를 선정하고 있음. 관광카리스마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매우 드문 노력을 통해, 관광진흥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을 말함. 종래의 관광지들이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고 쇠퇴일로로 걷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들 관광지를 좀더 매력있는 곳으로 개선하고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건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이들을 향후의 인재육성책으로 활용하고자 국토교통성에 의해 제정된 제도

자료, 한국관광공사, 세계관광시장정보, 각년도 자료.

나. 대만

- 대만 관광국은 2006년 3월 대륙관광객 대만관광시 보증금 확대 계획을 발표함. 중화민국여행상업동업공회(中華民國旅行商業同業公會) 전국 연합은 앞으로 「협정 위반자 자체 처분권(자율공약처분권-自律公約處分權)」을 집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동시에 이는 업자간의 자율적인 관리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됨.
- 대만은 2004년 ‘대만방문의 해’를 맞아 외래객 유치목표를 320만명으로 설정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였음.

<표 II-12> 대만의 관광산업 관련부문 주요 지원제도

구 분	내 용
중국인 대만여행 1일 최소 지상비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인 대만여행 상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대만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대만 교통부 관광국, 여행업공회 전국연합회 및 여행업품질보장협회는 2007년 1월1일부터 중국인 대만여행 1일 지상비를 1인당 최소 미화 80달러(NT\$2,500)로 정하는 방안에 합의 · 이 방안의 실시를 위해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2006년 12월25일 「대륙 지역 주민의 대만지역에서의 관광활동 허가방법(大陸地區人民來台從事觀光活動許可辦法)」 수정안을 통과시켰음
대륙관광객 대만관광시 보증금 확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륙 관광객 접객 여행사를 대상으로 현재의 100만 NT\$에서 200만 NT\$로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대륙 관광객이 해당 투어단체를 이탈할 경우 1인당 20만원씩을 보증금에서 깎아나감. ·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시킴.
대만방문의 해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목적 입국 한국인에게 30일간 NO-VISA 및 전세기를 운항하여 대만으로 관광객을 송출한 여행사에게는 편당 한화 4백만원을 보조 (지방공항은 편당 5백만원) · 일본인 관광객을 실은 전세기 운항 시 타이페이, 까오슝 공항노선은 80만엔, 지방공항의 경우 100만엔까지 보조금 지급.
병역대체 직종에 관광분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관광객 倍增계획’(2008년까지 대만방문 외래객수를 2003년의 두배인 500만명으로 증가시킨다는 정부 정책) 일환으로 병역대체 직종에 관광을 포함. · 관광분야 의무복무로 병역을 대체하는 제도로 2003년 하반기부터 실시. · 자격요건 : 4년제 대학 여행 및 관광관련 학과 졸업자 · 근무 분야 : 주요 관광지, 관광안내센터, 국립공원, 관광 안내센터 등

자료, 한국관광공사, 세계관광시장정보, 각년도 자료. 한국관광공사, 주요 경쟁국의 관광 인프라 개선 사례 및 시사점, 2004.4.

다. 캐나다

- 캐나다 국가 관광관련 기본법령의 핵심내용은 연방정부의 경우 Canadian Tourism Commission Act는 캐나다 관광공사(Canadian Tourism Commission) 설립 근거 및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Financial Administration Act는 캐나다

연방정부 예산 책정 및 운용 등 예산 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 및 여왕 직속기관(Crown Corporation) 설립근거 및 관리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 주정부인 온타리오주의 Tourism Act. RRO 1990 등은 여행사의 인허가 및 운영 등 온타리오주 내의 관광산업 운영에 대한 근거 및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표 II-13> 캐나다의 관광산업 관련부문 주요 지원제도

구 분	내 용
캐나다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	· 2007년 10회째를 맞는 프로그램으로 약 700명의 에이전트가 동 프로그램 수수료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업계 Tax Refund 제도	· 2007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캐나다 정부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했던 기존 Tax Refund 제도 폐지,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업계 Tax Refund 제도를 신규로 도입 · 신규 Tax Refund 제도 수혜대상자 · 외국 여행사(투어오퍼레이터, 인센티브관광, 회의 기획자 등) · 국제 컨벤션 기획자 또는 스폰서, 외국인의 캐나다 현지 전시박람회 전시자 · 캐나다에 상주하지 않는 업체에게 단기 숙박 또는 단기 숙박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등
컨벤션산업 육성	· 캐나다 관광공사의 업계 대상 파트너십 프로그램 · Tier 2 Regional Initiatives : 미국과 캐나다 업계만을 위한 지역별 Showcase 기획 및 활성화 · Site Inspections Program : 행사 유치 전에 개최주체를 초청하여 답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항공료 등) · Familiarization Program : 행사 유치 후 행사개최지 답사에 소요비용 지원 · Tradeshows : CTC에서 참가하는 각종 박람회 참가기회 부여 및 지원
토론토 겨울축제인 WINTERCITY Festival	· 겨울 휴한으로 유명한 토론토시의 관광 비수기를 타개하고 지역 경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야외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 문화, 음식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겨울 축제 · Warm Up Series : 유료 실내 공연 및 할인된 관광명소 소개 · 행사 장소 : 토론토 전역의 관광명소 및 공연장 · 토론토 최대의 쇼핑센터인 이튼센터 내 무료 공연 · 주요 관광명소 할인권을 제공하는 WINTERCITY Passport 발간 : 30개소의 관광명소에서 정상가에서 20%를 할인하거나, 2명 입장시 1명 무료 입장 등으로 방문객 유인 · Winterlicious : 시내 유명 식당의 메뉴를 할인가로 제공 · PRIX FIXE Promotion : 토론토소재 특급호텔 식당을 포함한 120개의 유명식당이 참가하는 프로모션으로서, 3개 코스로 이루어진 점심메뉴를 C\$15-20, 저녁메뉴는 C\$25-35선에 맞추어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하였음.
DMF(Destination Marketing Fee)	· 광역토론토(GTA) 지역의 호텔들이 객실료에 3%의 추가요금을 부과, 적립후 토론토 관광청(Tourism Toronto)을 통해 지역 관광마케팅기금으로 활용. PST 및 GST 등 각종 세금과의 총합이 전체요금의 15%를 초과하지 못함 · 토론토 관광산업의 효율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 조성이 목적
캐나다 국내여행 장려 프로그램 Get Going Canada	· 캐나다 관광청에서는 심화되는 관광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시장뿐 아니라 자국민 대상 국내 여행을 하나의 시장으로 분류하여 프로모션 · 이 캠페인은 2004년 4월에 처음 시작. 이 캠페인의 골자는 주요 파트너인 토요타 자동차 캐나다 법인과 손잡고 캐나다를 가장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자동차 여행을 강조하면서 보다 많은 내국인들이 국내에 남아서 자국을 여행하도록 장려하는 것

자료, 한국관광공사, 세계관광시장정보, 각년도 자료.

라. 두바이

- 사막의 불모지에서 세계적 관광지로 부상한 두바이의 성공 요인은 기업의 독창적인 개발 아이디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임.
- 두바이의 성공은 정치리더십, 친기업적 환경, 무세금, 양질의 인프라, 상상력에 기반한 개발사업과 이벤트 기획 등에 기인함.

<표 11-14> 두바이 관광산업 관련부문 주요 지원제도

구 분	내 용
출입국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운영체제 구축, 출입국절차 간소 · 출입국에 따른 서류작성을 생략해 주며, 농수산물 검역과 외화관련 규제가 없음, 자국민이나 외국인 주재원은 발급받은 카드로 공항의 전자게이트를 수 초만에 통과 · 공항이 도심에서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접근성이 극히 양호
외국인 투자 입차 및 소유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외국기업에 대해 토지임차권(99년간) 제공 및 제벨 알리와 같은 자유무역지대내 외국인 토지소유권 100% 보장 · 주택 구입시 주거비자가 발급되고, 거래가 2%의 등록세를 제외하고는 세 금이 면제됨.
투자자 유치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면제 및 관세 5% 부과 등 개인·기업 투자자 활동 적극 지원 · 4 無 정책 : 법인세 無, 소득세 無, 환율통제 無, 무역장벽 無 · 4 Competitive 정책 : Competitive 수입관세(5%), Competitive 인건비, Competitive 에너지 비용, Competitive 부동산 가격
생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자 및 입주자의 물리적·제도적 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 노력 · 약 80개의 외국인학교 설립 및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헬 스케어시티가 2010년 완공될 예정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외 관광레저도시 개발사례의 시사점, 2006.5. 삼성경제연구소, 두바이, 세계로 열린 중동의 허브, 2005.5.

Ⅲ. 제주지역 관광산업 관련 지원제도 현황

1. 관광정책 변화추이

가. 2000년

- ‘도민과 함께하는 관광 재도약 추진’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계량적 목표로는 관광객 410만명 유치, 관광수입 12,207억원 달성임.
- 추진목표로는 모든 산업에 관광 산업적 기능이 고려 되도록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관광 재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임.
-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첫째, 관광관련 조직·인력 보강,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 둘째, 중국, 일본 등 주요 표적시장에 대한 홍보강화로 관광객 유치 증진. 셋째,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통한 다시 찾는 관광지 조성. 넷째, 관광이벤트의 대형화, 차별화를 통한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등임.

나. 2001년

- ‘관광을 중심으로 한 국제자유도시 기반 마련’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계량적 목표로는 관광객 420만명 유치, 관광수입 15,545억원 달성임.
- 추진 목표로는 첫째, 환경 변화를 수용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둘째, 관광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 셋째, 관광의 산업적 육성을 위한 기반 정립 및 제도 개선 등임.
-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첫째, 관광관련 기본요소를 체계화하기 위해 관광상품 다양화, 수용태세 개선을 추진. 둘째,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해 국내·외 관광시장 집중 개척. 셋째, 관광상품 개발, 이벤트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 추진. 넷째, 수요자 중심 관광개발 활성화로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 다섯째, 관광관련 기관간 연계 강화로 도민과 함께하는 관광행정 추진 등임.

다. 2002년

- '제주관광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계량적 목표로는 관광객 450만명 유치, 관광수입 1조6,626억원임.
- 추진목표로는 첫째, 국제자유도시 본격추진, 월드컵 개최, 주5일근무제 실시 등 관광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발전 방안 마련. 둘째, 관광지 제주 이미지 제고 및 관광시설 확충을 통한 제주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임.
-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첫째, 민·관협력을 통한 제주관광의 질적 전환 기반 구축. 둘째, 투자유치 본격 전개 및 관광지 개발의 활성화 등임.

라. 2003년

- 계량적 목표로는 관광객 480만명 유치, 관광수입 1조6,065억원임.
-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첫째, 친환경적 생태·녹색체험 등 관광상품 개발 휴양지 조성. 둘째,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추진. 셋째,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관광Businessmen 육성으로 서비스 개선 등임.

마. 2004년

- '관광객 510만명 유치'에 정책적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계량적 목표로는 관광객 510만명 유치, 관광수입 1조7,397억원임.
-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첫째, 주 5일 근무제, 북한관광개방, 고속철도 개통 등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체험상품을 개발하여 재방문 고객 유치 기반 마련. 둘째, 한류스타를 이용한 특색있는 제주관광이벤트 개최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관광홍보 전략으로 관광객 유치 등임.

바. 2005년

- 관광객 유치목표는 510만명(내국인 470, 외국인 40)이며, 관광수입은 1조7,879억원(내국인 1조3,354, 외국인 4,525)임.
-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관광진흥 실천전략 마련을 위해 관광정책 개발 및 평가단 구성·운영함.
 - 둘째, 국제관광지에 걸맞는 관광서비스 및 건전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관광종사원 교육 강화, 영·일·중 통역 안내원 및 문화유산해설사 육성, 관광불편 신고센터 확대 운영(6개소 → 88개소로 읍면동 단위), 건전 관광질서 합동 단속반 운영(월 1회 단속), 관광부조리 개선(분기 1회 특산품 가격 조사 후 비교표 배포) 등을 추진함.
 - 셋째,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하기 위해 제주지역 대표 축제 개발(제주신화축제), 특산물 관광기념 상품화(공모전 입상자 상품화 1억원 지원) 등을 추진함.
 - 넷째,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환경을 고려할 때 제주도 관광조직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관광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주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함.
 - 다섯째, 국내의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따른 여행심리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제주관광의 질과 양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사. 2006년

- 관광객 유치목표는 540만명(내국인 495, 외국인 45)이며, 관광수입 목표는 1조 9,106억원(내국인 1조 4,060억원, 외국인 5,046억원)임.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진을 위해서 일본, 중화권 시장 +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 등 신규시장 개척, 초특가 음식투

어, 레인보우 체플웨딩 등 관광패턴 변화 대응상품 개발,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취재지원, 관광설명회, 팸투어 확대, 한·중·일 국제 크루즈관광 유람선 정기 운항(7월~10월) 등을 추진함. 둘째, 2006 제주방문의 해 홍보마케팅으로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함

아. 2007년

- 계량적 목표로는 관광객 550만명 유치, 관광수입 2조 160억원임.
- 내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주5일 근무제 확대(50인이상 사업장) 시행에 따른 관광 수요 증가, 저비용, 고효율의 상품인 KTX-크루즈 연계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강화, 국내 관광박람회 및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등)대형행사 참가 홍보를 강화함.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일본, 중화권 시장 +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 등 신규시장 개척, 한류열풍으로 인한 한류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를 위한 마케팅 강화, 국제 직항노선 증편 운항, 한중일 연계 국제 크루즈선 운항 등 접근성 강화, 초특가 음식투어, 일본인 신혼관광객 유치 등 고부가가치 여행상품 개발, 제주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취재지원, 관광설명회, 팸투어 확대 등임.
-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2007 제주 민속문화의 해 사업 추진. 제주민속 문화의 재조명을 통한 전통문화의 복원과 정비, 제주민속 문화의 정비를 통해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모색함.
 - 둘째, 제주 Welcome-Center 건립. 지식 정보화 시대 인터넷 및 이동통신을 통한 관광정보 수요 증가에 따라 고객중심의 종합적인 정보취득 및 안내 서비스 공간을 조성함.
 - 셋째, 건전 관광질서 확립 대책 강구를 위해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강화, 상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특산품 주요 구매 품목 조사홍보, 리콜(Recall) 및 해피콜 (Happycall) 제도 운영 등을 추진함.

- 넷째, 제주 관광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구축하고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정하는 우수 관광업체 선정 및 인증을 위해 관광품질 인증제를 도입함.
- 다섯째, 축제의 사전 심의를 통한 지원과 축제평가를 통하여, 지역 축제의 내실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전심의·평가제를 시행함.
- 여섯째,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도시 육성 기반 구축, 회의 유치 마케팅 및 사후관리 강화, 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함.

<표 III-1> 연도별 주요 관광사업

연 도	주요 사업	비고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과 함께하는 관광 재도약 추진 · 제2회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추진 · 건전관광질서 확립대책 추진(관광객맞이 「친절, 질서, 정결」 운동 추진, 관광질서 저해사범 지도단속 등) ·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추진(기초 축제의 통합 추진) · 관광객 유치 · 홍보 활성화(팸투어, 해외 관광박람회 참가 등) · 제주문화 관광자원화(삼성혈 성역화 및 인근 문화시설 연계한 문화관광 벨트화, 역사·설화 등 문화유적을 활용한 특성있는 관광지 조성 등) ·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 ·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 농·어촌 펜션업 운영 추진 	제주도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200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관광산업육성 기반정립(관광통계방법 개선, 제주도관광협회 활성화 등) · 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 구축(「정상집」 평화센터 건립, 남북 교차관광 추진, 관광종합센터 건립 등) · 해외 표적시장 마케팅 강화(해외 마케팅 활동지원 강화, 현지 관광 설명회 및 관광행사 참가홍보 등) · 관광이벤트 및 상품개발 활성화(세계섬문화축제 성공적 개최, 문화예술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추진, 스포츠 이벤트 관광상품화 등) · 관광 이미지 제고(관광안내의 충실성 제고, 관광지 이미지 개선 등) · 관광 수용환경 개선(범도민 관광SOC 실천운동 추진, 국내·외 항공수송능력 확충 등) · 관광개발 투자여건 조성(투자유치 및 관광개발 활성화, 관광개발 주민참여를 위한 펜션업 시행 등) · 국제교류활용 관광객 유치기반조성(국제관광교류 협력 활성화, 제5차 섬관광정책 포럼 운영 등) 	
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관광의 질적 전환 기반 구축(관광진흥확대회의 운영 내실화,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운영 등) · 관광지 개발의 새로운 제도개선 추진(관광진흥지역 및 투자진흥지역 지정) · 투자유치 활동의 본격 추진(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인센티브) ·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 운영 · 휴양펜션산업 육성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제일의 생태·녹색 체험관광지 조성(관광진흥 캠페인 전개, UNESCO의 생물권 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 지정 이용 상품화 등) ·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추진(관광객 유치 우수 여행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로고사용 등 인센티브 제공, 제주관광홍보관(국내 2, 국외3) 확대운영 등) ·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관광Businessmen 육성으로 서비스개선 (관광중사원 교육강화와 복장지원, 인증서 부여 등 자긍심 제고, 관광활성화 포럼 개최 등) ·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전략(국내외 관광홍보관 확대 운영, 관광객 유치 우수 여행사 시상등 우수업체 인센티브제 시행 등) · 경쟁력 있는 관광 조직체계 개편 추진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가지 새로운 체험 관광상품의 개발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이벤트 추진(2004 한라산 건기대회, 한라산 철쭉트레킹대회 등) ·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 전개(인천·경기지역 수학여행 전담교사 초청 팸투어, 내고장 러브투어프로그램 운영 등) · 축제의 활성화를 통한 제주관광 체험 참여 기회 확대(전문가 그룹 구성, 국내외 우수축제 비교견학 벤치마킹 등) · 한류 등 문화관광기반 구축(한류를 이용한 제주관광홍보, 영상드라마 「울인」 주인공과의 만남의 날 등) ·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제주관광홍보 전략(인터넷을 이용한 국내·외 제주관광 홍보, 잠재관광객 제주 유치 등) · 관광종합정보센터 건립을 통한 관광활성화 추진 	제 1차 제주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수립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현황자료, 각년도.

연 도	주요 사업	비고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 실천전략 마련을 위해 관광정책 개발 및 평가단 구성·운영 · 국제관광지에 걸맞는 관광서비스 및 건전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관광종사원 교육 강화, 영·일·중 통역 안내원 및 문화유산해설사 육성, 관광불편신고센터 확대 운영, 건전 관광질서 합동 단속반 운영, 관광부조리 개선 등 추진 ·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하기 위해 제주지역 대표 축제 개발(제주신화축제), 특산물 관광기념 상품화 등 추진 · 제주관광공사 설립 추진 · 국내외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따른 여행심리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을 전개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진을 위해서 일본, 중화권 시장 +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 등 신규시장 개척 · 초특가 음식투어, 레인보우 채플웨딩 등 관광패턴 변화 대응상품 개발 ·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취재지원, 관광설명회, 팸투어 확대 · 한·중·일 국제 크루즈관광 유람선 정기 운항(7월~10월) 등 추진. · 2006 제주방문의 해 홍보마케팅으로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제주방문의 해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 제주 민속문화의 해 사업 추진 · 제주 Welcome-Center 건립 · 건전 관광질서 확립 대책 강구를 위해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강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특산물 주요 구매 품목 조사홍보, 리콜(Recall) 및 해피콜(Happycall) 제도 운영 등 추진 · 관광품질 인증제 도입 ·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전심의·평가제 시행 ·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도시 육성 기반 구축, 회의유치 마케팅 및 사후관리 강화, 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추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현황자료, 각년도.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본 법의 제정이유는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및 운영특례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절차 및 운영특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과 지정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가. 특별법 1단계 제도개선 내용

-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관광공사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권한과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 부여 등의 권한을 도지사가 갖도록 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사업규모와 사업대상을 완화하였음.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는 종전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에서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인 투자로 확대하였으며, 그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에 교육·의료기관, 전자·정보·생명공학 관련 사업 등을 추가하였음.

나.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내용

- 관광산업분야 2단계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확대 허용으로 제3국 항공기의 제주 경유로 국제취항노선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 관광객의 내국인 면세점 이용 확대를 위해 주류구입한도를 1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하고, 이용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함.
-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지정·운영제도를 시행하여 여행업 등에 대한 품질인증 성과평가 및 지원으로 품질경쟁 유도효과를 기대함.
- 신종 레저스포츠(ATV, 모험경주차 등)를 관광사업으로 육성함.
- 문화·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공연 관련 권한이양, 체육시설의 자율적 관리 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함.

<표 III-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1단계 제도개선 관광산업 관련부문 주요 내용

과 제 명	내 용	비 고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제170조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조건·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여행업의 등록기준,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171조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	·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금의 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용도를 따르도록 함.	제173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의 전출	·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매년 1월 말과 9월 말 2회로 분할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고,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금의 납부를 통지한 사실과 그 납부상황을 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시행령 제25조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개설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192조
의료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	· 의료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이 가능하도록 함.	제198조 내지 제200조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	·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지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234조 및 제235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완화 및 지정대상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사업규모와 사업대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는 종전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에서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인 투자로 확대하는 동시에 그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에 교육·의료기관, 전자·정보·생명공학 관련 사업 등을 추가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도 종전에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보로도 가능하도록 함.	시행령 제36조

<표 III-3>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관광산업 관련부문 주요 내용

과 제 명	내 용	비 고
관광사업에 관한 특례	신종 레저·스포츠 기기(4륜 오토바이, 모형 경주차 등) 등을 자체적으로 관광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광사업 종류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71조
관광종사원의 교육에 관한 특례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종사원의 교육 실시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광종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71조의2 신설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제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제도의 시행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71조의3 신설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제주관광공사”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출자·출연·보조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73조제3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심의권한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로 이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17조 및 제218조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회사와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에 투자한 회사에 대하여 출자총액 제한제도 적용 배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18조의2 신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사항 변경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정·해제 심의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로 이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26조
개발사업 착수기한 단축 등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단축(2년→1년) 산업단지(국가, 지방, 일반지방)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시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승인 배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29조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의 장기체류 허용	장기 입원·요양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 및 가족에게 4년간 체류 허용	법무부 지침 개정 ('07. 4. 1 시행)
「내국인 면세점」 이용 확대	면세 구매한도, 이용횟수 등 확대 - 주류 구매한도 (12만원) 폐지 - 연간 이용횟수 확대(연 4회→연 6회) - 면세점 수 확대(관세청과 협의)	조세특례제한법, 제주도면세점특례 규정 (대통령령) 개정
기획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의무화	모객실적에 따라 기획여행사의 보증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개정
관광종사원 의무종사제 도입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의무종사제 도입	관광진흥법 개정
관광숙박업의 분양 및 회원모집 소급 적용	기존 관광호텔 등도 분양 및 회원모집이 가능토록 소급 허용	관광진흥법령 개정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확대허용	국가 전체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대한 5자유 운수권을 항공회담을 통하여 추가 확대 추진	향후 항공회담시 적극 반영 추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종합적 검토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지정요건과 감면 절차의 합리화·단순화 마련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안 마련('07년말) 후 검토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확정내용, 2007.7.

IV. 제주지역 관광산업 관련 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첫째,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기업의 육성을 위해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등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제주지역 관광기업체의 현실에 맞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특히 2단계 제도개선에서 추진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제도를 활용하여 유력하고 명망있는 기관이 관광산업 각 분야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동시에 인센티브 정책 실시가 필요함. 정부가 계속하여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관광업계에서는 여전히 규제는 많다고 함. 과거에 비해 확연하게 규제가 완화된 획기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셋째, 향후 관광관련 권한의 일괄 이양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위임방식으로는 각 관련법령을 일일이 나열하고 그 규정 조문별로 배제되거나 예외규정을 또 다른 법률로 제정해야 함. 즉 업무의 포괄위임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관광관련 권한을 일괄적으로 이양받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함.
- 넷째, 제주도를 국제적 투자가와 관광객을 획기적으로 유입하고 동북아 대표적 관광·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법·제도가 필요함. 법적, 제도적, 그리고 인적·물적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닌 국제자유도시로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법인세율 13% 단일 세율로 인하, 사전투자진흥지구지정 다양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 추진되고 있음.

2. 제도 개선

- 중앙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추진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중복되나 관련제도를 강조하기 위해 제시함.

가. 지식기반형 관광 육성

1) 관광정보 제공 의무화

-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마케팅 자료의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가 연도별로 갖추어져 있어야함.
- 예를들어, 직항노선이 개설된 중국인, 대만인의 제주방문시 인구통계적(성별, 연령별 등) 자료가 월별, 연도별로 조사되어야 하고, 관광성향에 대한 시장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현재와 같이 기초자료가 없이 홍보가 이루어지고, 상품이 개발될 경우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강원도에서는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하여 매년 강원관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인 통계자료의 확보를 위한 보고규정을 명확히 하여 관광산업 진흥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함.
- 관광객, 관광수입, 관광사업체 등의 관광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관광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항공사에서도 탑승객 정보 제공의 의무화가 필요함.

2) 법정 관광발전계획의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제시된 4+1 핵심산업중 관광산업은 핵심적인 산

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계획 수립의 근거가 없어 제주관광의 진흥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동북아 관광시장의 변화를 염두에 둔 거시적인 ‘제주관광 마스터 플랜’이 필요함.
- 지난 2000년도에 ‘제주도 관광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제주관광의 비전과 정책을 담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이 부재함.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여타 핵심산업과의 연계·육성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지시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산업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관광산업발전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함.

나. 관광사업체 육성

1) 장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여행업체에 대한 퇴출제도 시행

-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행업 등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여행업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성수기 한철장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영업행태를 자행하는 여행사들이 속출하고 있음.
- 장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여행업체에 대한 퇴출제도를 통해 사업능력과 의사가 있는 여행업체만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제주관광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음.

2) 할랄식당 인증사업 시행

- 강원도는 2006년부터 한국 이슬람 중앙회 인증을 받은 강원도 향토 할랄식당 인증사업을 시작함.

- 강원도가 무슬림 유치사업의 1차 타겟으로 삼은 말레이시아 무슬림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음식에 대한 불만족(높은 음식가격, 할랄음식 부족 등)이 높음에 따라 인증사업을 추진함.
- 제주도에서도 전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 관광객 유치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할랄식당 인증사업을 추진해야함.
- 음식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이슬람중앙회에서 교부한 인증마크를 부여함.
- 기 지정된 할랄식당에 대해서는 할랄식당 준수여부 및 무슬림 유치실적을 고려하여 재인증하는 절차를 마련함.

3)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속 적용

-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객실요금에 대하여 부가세 영세율을 지속 적용토록 제도화하여 다른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체재비를 경감할 수 있음.
- 관광호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197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1990년까지 적용되어 오다가 1991년 6월 과세형평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음. 그후 한국방문의 해(2001년)와 월드컵(2002년)을 앞둔 2000년 12월 다시 도입돼 2004년 12월까지 시행됐음.
- 관광호텔 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등과 관련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호텔의 외국인 숙박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재적용됨.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대해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대상 호텔은 롯데, 신라 등 관광호텔 583곳, 수상관광호텔 1곳, 한국전통호텔 1곳, 거제훼미리호텔 등 가족호텔 19곳 등 604곳이며 모텔, 여관, 여인숙 등은 적용되지 않음.

- 한국관광과 제주관광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아닌 지속적인 영세율 적용이 필요함.

<표 IV-1> 영세율 적용 연혁

기 간	적용	적용내용	비고
'77.1.1 ~ '91.6.30	적용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음식용역 포함)	외화획득 사업으로 인정 ('76.12.22, 부가가치세법)
'91.7.1 ~ '93.12.31	폐지	외국인 유치효과가 적고 내·외국인 차별과세 등 이유로 폐지	'90.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94.1.1 ~ '94.12.31	적용	'9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객실요금에만 1년간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의 2
'95.1.1 ~ '00.12.31	폐지	영세율 폐지로 관광호텔 객실료 10%인상 효과 초래	영세율 적용 관련 법규정 없음
'01.1.1 ~ '02.12.31	적용	'01 한국방문의 해, '02 한·일월드컵경기 객실요금에 한시 적용	법시행령 제26조제1항5의2(객실요금, '02.12.31까지)
'03.1.1 ~ '03.6.30	적용	이라크전쟁, SARS 등으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로 1차 연장	(객실요금, '03.6.30까지)
'03.7.1 ~ '03.12.31	적용	이라크전쟁, SARS 등으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로 2차 연장	(객실요금, '03.12.31까지)
'04.1.1 ~ '04.12.31	적용	관광수지개선대책(국무회의보고)의 일환으로 3차 연장	(객실요금, '04.12.31까지)
'05.1.1 ~ '07.6.30	폐지	영세율 폐지	
'07.7.1 ~ '08.12.31	적용	관광호텔 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등과 관련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위해 한시 적용	(객실요금, '08.12.31까지)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 세계합리화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2005. 추가 내용 작성.

4) 전세버스 평가제도 도입

- 사례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전세버스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관광 버스의 환경 성능 평가는 자동차 검사(차량검사)에 근거하는 배출 가스의 규제치를 근거로 4 단계로 평가하고 있으며, 승객은 국내 관광 버스가 환경친화형 버스인지를 버스 본체나 투어 팜플렛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여행사도 환경 성능이 좋은 버스 배차가 가능하게 되었음.
- 현 제주도의 전세버스업체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전세버스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전문가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 운영

- 한국관광공사는 '07년 2월 우리나라 기념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세계화를 위하여 관광기념품 업체와 전문가가 만나는 관광기념품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광기념품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함.
- 1차로 금속분야 참가신청 4개 업체, 유진공예(장신구보석함, 귀금속공예품), 제주바이오에너지(마그마팔찌, 흑기석 액세서리) 등에 대해 전문가 멘토링(Mentoring)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각 분야 기념품업체로 확대함.
- 관광기념품, 공예품, 향토음식 등 분야별로 디자인, 포장, 마케팅, 광고 등에서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함.

6) 단체관광객 유치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 감면혜택 부여

-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98년 550만명에 불과했지만, 2년만에 1,000만명을 넘어섰음.
- 말레이시아의 성공요인은 정부 관광기구의 대대적인 혁신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프로모션 전략의 추진, 그리고 획기적인 조세감면 등 산업구조를 뒤바꿀 정도로 강력한 지원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었음.
- 예를들면 500명 이상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사업자는 단체관광을 통해 획득한 수입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음.
- 일정 규모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관광호텔 등에 대해 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7) 최소 여행비용 의무화제도 도입

- 일본(오키나와)과 대만이 노투어피와 덤핑상품 근절을 위해 패키지 여행상품에서 항공·숙박료를 제외한 가이드 비용과 식비 등 지상경비를 여행객이 직접

지불토록 하거나 최소비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소비자 보호규정이 없어 관광업계의 노투어피와 과다수수료 등 부조리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 관광시장의 혼탁을 막고 적절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상품 지상비의 최저 보호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중국, 대만, 홍콩 등은 최소 여행비용 의무화제도를 관광시장환경에 맞게 도입하고 있음.

<표 IV-2> 최소비용 의무화 제도 도입사례

구 분	세부내용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절강성관광협회에서는 관광시장의 혼탁을 막고 적절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7년 해외 5개 관광목적지 관광상품의 최저 보호가격을 발표하였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 5일 상품이 3,180위안, 일본 6일 상품이 6,999위안, 홍콩·마카오 5일 상품이 1,800위안,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10일 상품이 2,699위안, 그리고 태국 7일 상품이 1,999위안임.
대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인 대만여행 상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대만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대만 교통부 관광국, 여행업공회 전국연합회 및 여행업품질보장협회는 2007년 1월1일부터 중국인 대만여행 1일 지상비를 1인당 최소 미화 80달러(NT\$2,500)로 정하는 방안에 합의함
홍 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여행협회와 광저우여행협회는 2006년 9월부터 점심과 교통편이 포함된 홍콩 여행가격을 최소한 98위안 이상 받기로 합의했으며 앞으로 홍콩 여행 1일 패키지는 지정된 상점 1개 이상 쇼핑을 포함시킬 수 없게 됨.

자료 : 한국관광공사, 세계관광시장정보, 각년도 자료.

8) 관광민박업 신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민박사업자로 지정받고 영업을 하는 제주도의 민박업체 수는 총 823개소(4,029실)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민박업체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관광지 주변, 농어촌지역 등에 소재한 민박중에서 농어촌관광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하거나,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수준높은 민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 등을 일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주도 지정 '관광민박업체'로 지정함.

- 인증마크를 부착해 주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주고, 제주관광 홍보사이트에 소개하며, 시설 개·보수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함.

9) 관광컨설팅 제도 도입

- 민관 공동교육 혹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역의 농어촌 관광리더와 주민, 경영 참가 주민,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관광컨설팅 제도를 도입함.
- 또 여행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 재정지원방식과 더불어 비재정지원방식으로 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진단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 담당 공무원도 교육에 동참하게 하여 관광컨설팅에 지식 습득과 현장의 애로 사항 청취, 재정지원 교육 등에 대해 시행하도록 함.

<표 IV-3> 관광컨설팅 사업 예시

구분	요 율
지역리더와 주민	· 지역리더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태·문화·녹색관광에 대한 체계적 프로그램 (마케팅, 홍보 기법 등) 실시
경영참가 주민	· 농가민박, 펜션, 레스토랑 등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실시
여행업체 대상	· 우수 여행업체의 선진경영 해외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다양한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교훈을 습득하고 현실에 반영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관광진흥계획, 2007.

10) 휴양펜션업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

-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처음 도입된 휴양펜션업은 제주관광 인프라의 확충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도민참여사업으로 도입된 제도임.
- 특별법에 의해 등록된 휴양펜션업 외에도 과거의 민박이 고급화, 대형화되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펜션이란 간판을 내걸고 사업을 하는 상황임.

- 휴양펜션업을 처음 도입한 취지인, 제주도내 중·소자본을 가진 농·어민이 소규모 관광숙박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주체 개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대책이 필요함.

<표 IV-4> 휴양펜션업 경쟁력 강화 지원대책

구 분	세부내용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축물분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근거 마련	· 휴양펜션업은 1차산업 종사자들이 운용한다는 점에서 민박과 동일하게 농어업인이 운용할시 주어지는 세제혜택 부여
공과금의 영세율 적용	· 농어촌민박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는 반면, 휴양펜션업은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국세납부에 큰 부담을 안고 있고, 전기, 상·하수도 요금도 영업용에 준하는 요금을 납부하고 있음. ·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이나 주말농원내의 숙박시설물처럼 각종 세금과 공과금 납부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마련 · 단, 숙박업 필수등록 요건해제시 소방, 안전시설 등 관련 필요규정까지 해제하는 것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한조항 규정
면허세 단일화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에 따른 면허세 납부와 휴양펜션업에 따른 면허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상황 · 이에 따른 단일화하는 규정 마련 필요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펜션업의 위기, 대응 해법은 없는가?, 2007.8.22.

11) 중·저가 숙박시설 체인화 추진

- 서울특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2~3급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외국 중저가 호텔과 연계해 체인화하거나, 서울 자체브랜드를 개발해 체인화할 예정이다.
- 체인화 참여업체에 대해 자체 브랜드 개발, 예약·결제 시스템 구축, 시설개보수 자금 지원, 관광호텔 증개축시 용적률 상향조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 또한 관련업체에 대한 재산세,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 감면도 추진하고 있음.
- 제주도의 중저가 호텔인 경우도 특급 관광호텔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 중저가 호텔과 연계해 체인화하거나, 제주 자체브랜드를 개발해 체인화할 필요성이 있음.
- 또 서울시에 버금가는 인센티브 부여와 세제감면 혜택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함.

다. 접근성 향상 및 출입국 제도 개선

1) 36시간체재하는 환승관광객에 대해 공항이용료 면제 추진

- 공항 환승객이 주변지역 관광시 공항이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 관리규칙'이 마련됨.
- 환승객을 대상으로 1박 관광상품개발을 위해서는 공항이용료(1만2천원) 면제가 절실하다는 지자체와 관광공사 등의 의견에 따른 것임.
-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들을 대상으로 1박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골프와 카지노 이용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이내'를 '36시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무사증제도 개선

- 공항과 항만을 이용해 제주자치도에 입국하는 외국 여행객에 대해서는 무사증제도 확대 시행중임.
- 무사증제도는 제주자치도의 항만과 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어 제주도와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여행객은 무사증 혜택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제주도를 목적지로 하는 무사증입국 대상국가 여행객이 국내 소재 다른 지역 국제공항을 이용하여 환승하는 경우 무사증 입국 허용방안을 마련함.

3) 항공자유화 확대

- 항공회담을 통한 제5자유 운수권 추가 확대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상호주의에

입각한 항공협상으로는 상대국이 제주도를 제5자유 운수권 허용희망지역으로 선택하지 않는데 기인함.

- 제주도에 한해 제8자유 운수권(외국항공사가 자국에서 출발하여 한국내 지점간 여객·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자유) 허용 검토 및 외국항공사의 투자를 적극 유치함.
- 국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 항공 자유화정책 등을 감안, 제주도에 한해 시범 실시방안을 검토함.

4) 저가항공 활성화

- 2004년부터 소형 저가항공(제주항공, 한성항공)이 제주-김포·부산·청주노선 등에서 운항을 개시함.
- 제주항공, 한성항공은 제주노선의 13% 수준을 점유, 접근성 제고에 상당히 기여함.
- 영남에어도 부정기항공 운송면허를 취득('07.11), '08년부터 제주-김포·대구노선 운항 예정임.
- 탑승율이 80%를 상회하고 있으나, 운항 초기비용 부담 및 규모의 경제 미달 등으로 적자 상태임.
- 부정기항공(한성항공)의 경우 항공기 좌석규모 제한(80인승이하)으로 규모의 경제실현에 장애됨.
- 부정기항공 항공기 좌석규모 제한(80인승 이하)을 폐지를 추진함.

라. 관광교육제도 개선

1) 현지가이드 의무 이용제도의 실시

- 중화권관광객 내도시 제주관광에 대한 안내는 육지여행사에 소속된 화교가이

드들이 안내하고 있는 실정임.

- 제주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는 화교가이드들이 안내를 할 경우 제주의 참모습을 소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한편으로는 제주지역내에 중화권 관광객을 안내할 수 있는 자질있는 관광통역안내사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2005년 현재 중국어 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보유한 제주도 거주자는 175명임. 실제 활동하고 있는 안내사는 소수임.
- 중화권 관광시장을 핵심시장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통역안내사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유럽이나 동남아의 관광선진국들은 고궁, 박물관 등 현지의 역사와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현지 가이드가 안내를 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추진에 따른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여 제주도내 역사, 문화관광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제주도 거주 가이드들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큼.
-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전문적이고 해박한 지식으로 관광객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제주거주 관광종사자들의 자생력과 전문성 향상의 기회로도 활용가능함.

2) 관광종사자 의무교육제 도입

- 제주관광의 문제로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정신의 결여를 들 수 있음.
- 중앙정부의 규제완화정책추진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의무교육제가 폐지되어, 현재 집합식 교육과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관광객의 기대수준이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전문관광 종사원의 질적능력과 마인드의 제고가 요구되고 있음.

- 지속적인 유·무자격자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함.
-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관광종사원 교육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관광 교육기반을 조성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음.
- 관광종사자 의무교육제 도입을 통해 제주관광 종사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킴.
-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명단, 횟수, 시간 등 개인별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관광종사자 명단 및 마일리지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함.
- 해당교육을 이수한 후 모범사례를 발표하도록 하여 우수 관광종사원에 대한 포상제를 시행함.

3) 초등학교 학생대상 관광교육 실시

- 초등학생 대상으로 적합한 관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정기적인 학교내부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유소년 시기부터 관광기본예절 및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시킬 필요가 있음.
- 강원도에서는 2006년부터 관광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초등학생 관광교육을 실시한 결과, 관광교육을 통한 강원인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고장에 대한 정체성을 세우는 등 큰 성과를 거뒀음.
- 향후에도 강원관광을 이끌어 갈 더 많은 초등학생들이 관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교육연구학교를 확대·지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음.
- 강원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광교육연구학교를 단계별로 지정하고, 학년별로 적합한 관광예절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관광교육을 시행함.

마.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1) 크루즈산업 육성

(1) 국내항 기항 크루즈선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 크루즈 선박의 국내 항만 기항관련,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입출항료 및 접안료, 정박료 등임
- 국제 크루즈선의 국내 항만 기항 확대를 유도하고자, 항비 감면혜택을 부여함. 선박입출항료(50% 감면), 접안료 및 정박료(각각 50% 감면)
- 또 크루즈선 입항실적을 고려한 항비부과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있음. 1년에 1~2회 입항하는 선사와 20~30회 입항하는 선사가 느끼는 부담이 다를 수 있고, 외국항만에서는 일정횟수 이상 입항하는 경우 입항료를 감면해주고 있어 비교가됨.
- 싱가포르 항만청에서는 300톤 이상 선박이 6개월 내에 6번 이용하는 경우 300톤 이상의 선적에 대해 20%의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음. 또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제도가 있어 연간 항만이용료 S\$ 135/100 GT만 내면 1년 무제한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음.

<표 IV-5>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구분	요율
선박입출항료	·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28원
접안료	·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340원, 내항선 114원 ·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28.4원, 내항선 9.5원
정박료	·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178원, 내항선 58원 ·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14.9원, 내항선 4.9원

자료 : 문화관광부 · 해양수산부, 해양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2007.4.

(2)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심사 간소화 추진

-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통과여객 (TWOV: Transit Without Visa)을 인정함. 크루즈 관광객은 입국 목적이 아닌 관광 후 재승선하므로 대부분 비자가 없이도 통과여행객으로 무비자 입국 허용 적용이 가능함.

- 지중해의 크루즈 항만에서는 EU 국민들에게 최초 입항항만에서만 여권심사를 하고 중간기항지 항만에서는 다른 출입국 검사 없이 입출항이 허용됨.
- EU 외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입출국 수속시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입항 전에 승선하여 출입국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통과여객 제도는 출입국관리법령상 가능하나, 법무부 내부 규정에 의해 항공권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3) 선상수속절차의 인정

- 현재 크루즈선 입항예정시마다 여행사 및 국내대리점에서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선상 수속을 요청하고 있음. 입항시 마다 별도의 요청없이 선상수속을 체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크루즈 관광객은 고소득층의 노년층이 많아 불필요한 통제나 절차에 거부감이 높음.
- 입출국 수속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선상수속을 확대하여 크루즈 선내라운지에서 CIQ 기관이 직접 일괄적으로 승객과 대면 없이 수속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4) 크루즈 기항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기본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적 크루즈 목적지로서의 이미지와 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포지셔닝을 강화해야 함.
- 해운선사 및 총판 대리점의 외국 크루즈 유치 의욕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유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

- 입항횟수, 승객인원 등 외국 크루즈 유치 실적 대비 인센티브 제공 방법 및 규모에 대한 사전 기준을 마련함.

2) 의료 및 쇼핑관광 육성

(1) 의료관광특구 지정

- 정부는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경쟁력있는 의료분야 밀접 지역과 관광자원 연계가 가능한 지역, 외국인 접근이 용이한 지역 등 조건에 맞는 곳을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하고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산업을 4+1 핵심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한국관광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2관광 단지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함.

(2) 면세특구 지정

- 우리나라의 교육, 의료 및 관광레저 등 서비스분야 해외소비 급증으로 내국인들의 해외소비 및 외국수요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쇼핑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육성전략이 필요함.
- 현재 내국인 면세점이 운영중이지만, 품목, 구입한도 등에 제한이 있어 관광의 핵심유인인 쇼핑관광 매력도 제고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시, 도 전역 면세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도 전역에서 시행되는 면세쇼핑의 복잡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으로 시행되지 못함.
- 제주도 특정지역에 대해 면세특구로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도 전역

면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함.

- 이에 대한 효과는 관광구매 시스템에 의해 가맹점의 세원(공급가액)이 노출되어, 과표 양성화제도 정착 및 세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대금결제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도내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밀반출의 소지가 없어 경제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음.

바. 관광인프라 구축

1) 세계자연유산마을 지정 조례 제정

- 성산읍, 구좌읍에 소재해있는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만장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해당 마을(성산리, 월정리, 김녕리)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200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시레토코는 1988년 샤리 마을을 주축으로 한 지역민들이 설립한 시레토코재단(22명)이 샤리 읍사무소와 함께 시레토코 반도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함.
- 시레토코재단이 설립한 시레토코 자연센터는 환경성과 샤리 읍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공원관리와 자연해설, 생태조사연구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음.
- 세계자연유산이 소재한 마을 주민의 환경보전 의식이 유산관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를 고려할 때 자연유산이 위치한 마을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세계자연유산마을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유산 보존 및 마을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

2) 차이나타운조성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

차이나타운 건립 및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차이나타운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국내 화교의 경제활동 제약 및 인프라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음.
- 복잡한 중국인 채용절차, 외국인을 위한 창업자금 제도미비 및 불편한 금융거래, 화교학교의 학력 불인정, 중국음식점에 치중한 수익구조 및 번잡한 출입국 절차 등에 기인함.
- 제주관광은 중화권관광객이 지속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재일과 소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중화권관광객의 주된 불만은 음식과 쇼핑 관련 관광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내에 스푼 차이나타운 조성을 추진함.

<표 IV-6> 차이나타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	현 황	개선방안
차이나타운의 중국인 채용절차 간소화	· 음식 및 물 서빙하는 중국인 종업원은 채용이 안됨. · 주방장의 경우 규모와 매출에 따라 채용가능 숫자를 심사후 허가	· 차이나타운의 주요 유인상품이 될 중국음식점에서 중국인이 종사할 수 있도록 비전문취업(E-9, 1년)으로 입국·종사 가능토록 하고 주방장 채용을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으로 전환
화교기업인 출입국 절차 간소화 : 한중 기업인 카드 도입	· 화교기업인들의 경우 별도의 비자혜택이 없어 비자서류 및 출입국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 증대	· 한·중 기업인 가트 발급으로 차이나타운에 투자하는 국내외 화교 기업인들에게 내국인에 준하는 출입국 심사 간소화
창업자금 지원 및 금융거래 불편 해소	· 수십년간 내국인과 같은 세금을 납부해 온 영주권자 화교라도 벤처 창업자 금혜택 불가 · 외국인 등록 전산화 미비로 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	· 차이나타운 투자하는 국내화교에게 벤처 창업자금 지원 · 금융기관의 외국인 실명확인 프로그램 설치 장려
화교학교의 학력인정	· 화교학교는 국내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귀화 또는 일반학교 전입시 검정고시를 봐야하는 실정	· 대만이 한국인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하여 화교학교 학력 인정
중국어체험 중국요리 Zone 등 문화상품 다양화	· 중국음식점 수익과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수익구조	· 중국 전통음식, 언어,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각종 Zone, 한류 패키지 등을 통한 수익구조 확대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차이나타운의 활성화 방안, 2006.7

V. 결론

- 정부는 과거 관광산업을 사치성 소비성 산업으로 분류하여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한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여 규제완화 등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부처 합동으로 2006년 12월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2007년 7월에는 재정부 중심의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음. 또 2007년 12월에는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발표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2006년 2월 21일 제정하였고, 관광산업을 비롯한 4+1 핵심산업에 대한 육성책을 마련하기 위해 1단계,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차별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
- 또한 3단계 제도개선에서는 포괄적 권한이양과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부문에 대한 법·제도개선 추진으로 종전에 비해 획기적인 정책들이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제주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
- 다만, 제주관광산업이 법·제도적 지원책이 미흡만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달성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있음.
- 본 연구는 제주관광산업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개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음.
- 관광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제도를 포괄하여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대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된 과제는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중복되거나 관련제도를 강조하기 위해 제시함.

- 구체적으로는 지식기반형 관광 육성, 관광사업체 육성, 접근성 향상 및 출입국 제도 개선, 관광교육제도 개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 제시된 과제들중 많은 과제들이 학계, 업계, 행정에서 논의되어 왔던 과제들이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도 실현가능한 사업들임.
-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관광·휴양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새로 만들고, 수정하는것 만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
- 제주관광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민·관이 협력하여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혁신과 성과 창출의 노력이 지역의 역량과 결합될 때 국내·외 경쟁 목적지와 차별화된 성과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항공 접근성 제고방안, 2007. 12.

문화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0-2007.

문화관광부 등 정부부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6.12.12.

문화관광부 등 정부부처,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7.7.30.

문화관광부 등 정부부처,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2007.12.10.

문화관광부·해양수산부, 해양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2007.4.

이병욱,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 해소방안,” 관광산업진흥 대토론회 자료집,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2007.11.

이병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대책과 향후 관광산업 정책방향,” 한국관광정책 2007여름(통권 제28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07.2.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외 관광레저도시 개발사례의 시사점, 2006.5.

전국경제인연합회, 차이나타운의 활성화 방안, 2006.7.

제주관광학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부문 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05.7.

제주도, 도정백서, 2003-2004.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진흥 실천전략 수립, 2005.1.

제주발전연구원, 펜션업의 위기, 대응 해법은 없는가?, 2007.8.22.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업무보고자료, 2000-200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요구과제, 2006.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출범, 그 간의 성과와 과제, 2007.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관광진흥계획, 2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확정내용, 2007.7.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2 단계 입법 추진 관련 관광업계 의견(초안), 200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 세제합리화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200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법제 체계화 및 개선방안, 200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정책의 변화방향 연구, 200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뉴스레터 2007. 1.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참여정부 관광정책 평가와 차기정부 과제, 2007.

한국관광공사, 주요 경쟁국의 관광 인프라 개선 사례 및 시사점, 2004.4.

한국관광공사, 말레이시아 무슬림 관광시장조사, 200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크루즈 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방안, 2006.

허향진·정승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제주관광의 과제,” 제주관광학회, 2005 하계 정기학술대회, 2005.7.

JNTO, 국제관광백서, 2007.

연구진

연구책임 정 승 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오 상 훈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강 성 진 제주발전연구원 도정연구관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제도개선방안

인 쇄 일	2007. 12
발 행 일	2007 12
발 행 인	허 향 진(제주발전연구원장)
발 행 처	제주발전연구원
인 쇄 처	경신인쇄사 (☎ 746-2044)

ISBN 978-89-6010-045 9 933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出處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나 複製는 금합니다.